

INNOPAY 부가서비스 부속 특약서

(이하 “고객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이하 “회사”라 한다)는 기 체결한 “INNOPAY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후 부속 특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특약서는 “고객사”와 “회사” 간에 기 체결한 “INNOPAY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제4조 (양 당사자의 책임 및 의무), 제5조 (서비스 이용 제한)에 명시하지 않은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담보 사항을 추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가상계좌 서비스,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충전) 서비스, 지급대행(송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예치금 충전 가상계좌”의 이체 한도 금액이 송금 요청 금액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
 - ② 송금 요청 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 되었을 경우
 - ③ “예치금 충전 가상계좌” 또는 송금 요청 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 되었을 경우
2. “회사”는 “고객사”에게 부여한 “예치금 충전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대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경찰서, 검찰, 법원 등)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지급 정지를 요청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지급(송금)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INNOPAY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고객사”의 이용자가 이의제기(보이스 피싱, 스미싱, 오입금, 오송금 등의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고객사”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고객사”는 “INNOPAY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시 해당 거래의 정확한 이상유무 및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거래승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고객사”가 “회사”에게 요청한 금융 거래가 다음 각 호 중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INNOPAY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의 위반내용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3 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 ② “고객사”의 비정상 거래 요청으로 인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 공공기관(경찰서, 검찰, 법원 등)에서 거래 중지, 지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 ③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용도 또는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 동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영업이거나 영업할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 현금화 가능상품,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고금리 불법 대부업, 다단계판매, 유사수신업 등)
 - ④ 은행 등의 금융기관, 공공기관(경찰서, 검찰, 법원 등)의 금융 거래 중단을 요청 받은 경우
 - ⑤ 기타 “고객사”의 책임 및 의무위반 또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종 이용자 민원으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3 조 (담보 제공)

1. “고객사”는 본 특약서 체결 이후 7 일 이내에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 천만원)**을 “회사”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단 “고객사”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사” 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 질권 또는 현금담보 납부 방법 (**현금 천만원정 (₩)**) 을 통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사”가 제공한 ‘1 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고객사”의 일 예치금 또는 월 예치금의 입금한도를 정하며, “회사”는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고객사”에게 추가 담보의 제공 및 담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시 금융 거래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1 항에서 제공한 담보는 “고객사”의 거래가 1 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회사”는 2 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4. “회사”는 “고객사”의 사업 및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고객사”에게 계약기간 중에도 피담보채무액의 증액 및 추가 담보의 제공, 담보의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 제공기간이 만료되거나 “고객사”가 납부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실효성이 없는 담보라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담보제공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사”는 지체없이 “회사”가 요청한 담보제공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고객사”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경우 본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회사”에 귀속된다.
7. “고객사”가 본 특약 또는 “INNOPAY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그 손해액을 본조 1 항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해지 등에 따른 조치)

1. 본 조는 계약 만료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계약상의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되었음에도 “고객사”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즉시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경매하거나,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험금 청구 및 담보금 상계로써 “회사”의 “고객사”에 대한 채권에 총당할 수 있다.
2. 본 계약이 종료되고 “회사”는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고객사”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고객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가 이행된 후 1 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기 체결된 “INNOPAY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본 특약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6 조 (기타)

본 특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고객사”와 “회사”는 20 年 월 일 체결한 “INNOPAY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며, “INNOPAY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서”와 본 특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본 특약서가 우선한다.

본 특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2 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 年 월 일

계약자 (“고객사”)	상호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대표이사	_____ (인)

계약자 (“회사”)	상호	(주)인피니소프트
	사업자등록번호	119-86-46658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307호 한라시그마밸리 307호
	대표이사	황 인 철 (인)